충청남도
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01 주택 (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1항, 별표1)

2021.10.19.시행

구 분	거 래 금 액	상한요율	한도액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
	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-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
	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
	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

가. **중개보수**는 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 결정

나. **중개보수 한도액** 거래금액×상한요율

다. **거래금액**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)

- **임대차**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{보증금 + (월 단위의 차임액 × 100)}
  다만, 거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{보증금 + (월 단위의 차임액 × 70)}

라. **실비**(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)

- **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** 1건당 1,000원
- **증명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**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
- **여비 등(교통비, 숙박비)** 실비

02 오피스텔 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1호, 별표2)

구 분	상 한 요 율	비 고
매매·교환	1천분의 5	전용면적 85㎡이하로 일정설비(입식부엌, 화장실, 욕실 등)를 갖춘 오피스텔
임대차 등	1천분의 4	

03 주택 외(토지, 상가 등) 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2호)

거래금액의 1천분의 90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

충청남도